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167호)

예비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7. 2

다. 상정·의결일자 : 2009. 7. 13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주 문

○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

4. 주요내용 : 별지 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긴급 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427,59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8,607,720원을 지출, 58,988,28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 예비비로 지출한 4개 사업 중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 가뭄대책을 위한 소류지 준설,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예비비집행은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구입의 경우 2008. 7. 1. 지출이 결정된 것으로 2008년도 제1회추경이 4월에 있었고 (2008. 4. 23. 의회승인) 지출결정액 중 21.9%인 39,876,3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생명환경농업 추진상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요예측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점. 과다하게 지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예비비지출 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해대책의 경우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면 반영이 가능하였을 것 아닌가?
- 답 :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음.
- 문 : 사전예측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불용액고 많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 : 수요예측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통제로 예비비집행은 최소화하겠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7.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별 지』

□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과목				지출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라)	불용액 (가-다-라)	지출사유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일자	금액(가)	일자	금액(나)	일자	금액(다)			
총계						427,596,000		394,648,040		368,607,720		58,988,280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소 운영 경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예방	가축 전염병 홍보 및 공익수의사 관리	201-01 (사무 관리비)	2008. 4.22	40,000,000		20,888,020	2008. 4.29	20,888,020	0	19,111,980	조류인플루엔자 고성군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통제소 운영 경비
생명환경농업 추진 광역사리 포기 및 화물차 구입	농가 소득 안정	친환경 농업 활성화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8. 7. 1	182,000,000		168,164,020	2008. 8.22	142,123,700	0	39,876,300	생명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
가뭄피해예방을 위한 소류지 준설 및 관정개발	농촌 활력화 지원	농업재해 예방	한해대책 지원사업	401-04 (시설비)	2008. 11.21	37,500,000		37,500,000	2008. 11.24	37,500,000	0	0	가뭄지속에 따른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소류지 준설 및 관정개발 (보수)사업
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해소 위한 암반 관정 개발	상수도 관리	농어촌지역 마을 상수도 안정적 공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01-04 (시설비)	2008. 11.21	168,096,000		168,096,000	2009. 1.20	168,096,000	0	0	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으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 및 관로시설 사업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 제129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0조 (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